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7
----------	-----

제출년월일 : 2019. 0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현장중심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행정기구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 현황

현 행	개 편	비 고
본청 1실 1단 13과(79담당)	본청 1실 1단 13과(81담당)	+2담당
직속기관 5과(24담당)	직속기관 5과(27담당)	+3담당
1사업소(3담당)	1사업소(3담당)	-
8읍면 1출장소(38담당)	8읍면 1출장소(38담당)	-

나. 분장사무 대강 조정(안 제3조, 13조)

현 재			조 정	
부서명	담당	업무내용	부서명	담당
문화관광과	도서관	도서관	교육체육과	도서관
환경위생과	수질	지하수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

다. 평창군 보건의료원 위치 변경(별표 1)

명 칭	위 치	관할구역
평창군 보건의료원	평창읍 노성로 11	평창군 일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관계법령 발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생략(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4) 규제심사 : 비규제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7의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도서관 관련 업무

제3조제2항제8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

제13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지하수에 관한 업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보건의료원·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평창군보건의료원	평창읍 노성로 11	평창군일원
미탄보건지소	미탄면 미탄문화길 37	미탄면 일원
방림보건지소	방림면 방림1길 14	방림면 일원
대화보건지소	대화면 남산1길 36	대화면 일원
봉평보건지소	봉평면 기풍8길 32-4	봉평면 일원
용평보건지소	용평면 갈정지길 8	용평면 일원
대관령보건지소	대관령면 대관령로 63	대관령면 일원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	진부면 하진부리 251-1	평창군 일원
고길보건진료소	평창읍 고길천4길 13-15	고길리, 노론리, 조동리, 이곡리, 지동리, 상리
다수보건진료소	평창읍 숫돌고개길 16	임하리, 뇌운리, 계장리, 하일리, 다수리, 원당리
도돈보건진료소	평창읍 평창강로 854	마지1,2리, 천동리, 도돈리, 응암리, 대상리, 대하리
계촌보건진료소	방림면 운지로 294-14	계촌1,2,3,4,5,6리, 운교1,2리
하안미보건진료소	대화면 동천길 91	하안미2,3,4,5,6리
개수보건진료소	대화면 금당계곡로 832	개수1,2리, 상안미 1,2리
신리보건진료소	대화면 고토곡길 4	신1,2,3,4,5리
면운보건진료소	봉평면 진조길 14	면운1,2리, 진조리, 유포2리, 무이2리
등매보건진료소	봉평면 금당계곡로 1777-9	유포1,3리, 재산2리, 백옥포1,2리
속사보건진료소	용평면 양지길 10	속사1,2리, 노동리, 이목정1,2리
두일보건진료소	진부면 방아다리로 338-3	두일리, 척천리, 탑동리, 상진부2리
거문보건진료소	진부면 거문길 13-3	상월오개1,2리, 신기리, 거문리, 마평1리, 봉산리
수향보건진료소	진부면 오대천로 924	마평2리, 화의리, 장전리, 막동리, 수향리
유천보건진료소	대관령면 전나무길 8	유천1,2,3리, 병내리, 간평1리
용산보건진료소	대관령면 큰터길 21	용산1,2리, 수하리, 차항1리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실·과의 설치) (생략)</p> <p>② 실·과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1의2. (생략)</p> <p>2. 문화관광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u>다. 도서관 관련 업무</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마. (생략)</p> <p>3. (생략)</p> <p>4. (생략)</p> <p>4의2.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7. (생략)</p> <p>7의2. 교육체육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u><신 설></u></p> <p>8. 환경위생과</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 지하수에 관한 업무</u></p> <p style="padding-left: 20px;">바. (생략)</p>	<p>제3조(실·과의 설치) (생략)</p> <p>② ----- -----.</p> <p>1. (현행과 같음)</p> <p>1의2. (현행과 같음)</p> <p>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나.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삭 제></u></p> <p style="padding-left: 20px;">라. ~ 마.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4의2. (현행과 같음)</p> <p>5. (현행과 같음)</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7의2.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u>마. 도서관 관련 업무</u></p> <p>8.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라.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마. <u>대기, 소음, 수질오염, 유역관리에 관한 업무</u></p> <p style="padding-left: 20px;">바. (현행과 같음)</p>

<p>9. (생략)</p> <p>10. (생략)</p> <p>11. (생략)</p> <p>14. (생략)</p> <p>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p> <p>1. ~ 7. (생략)</p> <p><u><신설></u></p>	<p>9. (현행과 같음)</p> <p>10. (현행과 같음)</p> <p>11.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제13조(소관사무) ----- -----.</p> <p>1. ~ 7. (현행과 같음)</p> <p><u>8. 지하수에 관한 업무</u></p>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
연락처	(033) 330 - 2210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